

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4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9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시 . 민 과)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달서구직제규칙개정으로 공인관리업무가 “총무과”에서 “시민과”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대구광역시달서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 제361호('95. 8. 18)

3. 주요골자

-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시민과장”으로 변경.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·제7조·제8조·제11조제1항 및 제2항·제12조중 “총무과장”을 각각 “시민과장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공인 신조(개각)신청서 및 [별지 제6호서식] 공인사고보고서중 “총무과장”을 각각 “시민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(안)
제6조(공인의 신조·개각)	① 공인의 신조·개각은 <u>총무과장</u> 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. ② 사업소장,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에 의하여 <u>총무과장</u> 에게 신청하	제6조(공인의 신조·개각) ① <u>시민과장</u> ② <u>시민과장</u>

현행	개정 (안)
<p>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.....</p>
<p>제7조(공인대장) <u>총무과장</u>은 [별지 제2호서식]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·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공인대장) <u>시민과장</u>.....</p>
<p>제8조(인영의 보존) <u>총무과장</u>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[별지 제3호서식]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인영의 보존) <u>시민과장</u>.....</p>
<p>제11조(공인의 폐기) ① 공인의 개각,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<u>총무과장</u>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공인의 폐기) ①<u>시민과장</u>.....</p>
<p>② <u>총무과장</u>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[별지 제5호서식]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② <u>시민과장</u>.....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12조(공인의 사고보고 등)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,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[별지 제6호서식]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<u>총무과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공인의 사고보고 등)<u>시민과장</u>.....</p>
<p>[별지 제1호서식] 공인 신조(개각)신청서 년 월 일 <u>총무과장</u> 귀하 (이하 생략)</p>	<p>[별지 제1호서식] 공인 신조(개각)신청서 년 월 일 <u>시민과장</u> 귀하 (현행과 같음)</p>
<p>[별지 제6호서식] 공인 사고 보고서 년 월 일 <u>총무과장</u> 앞 (이하 생략)</p>	<p>[별지 제6호서식] 공인 사고 보고서 년 월 일 <u>시민과장</u> 앞 (현행과 같음)</p>